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
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강북구청장 (박겸수)
제출 연월일	2016. 2. .

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민생활국 및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복지국과 복지정책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명칭 변경
(안 제3조 제7조 제1항)
- 나.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명칭변경
(안 제7조 제2항)
- 다.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명칭변경
(안 제7조 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지방자치법 제112조
 - 2)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3. ~ 2016. 3.) 결과 :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제외대상)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」 제13조”를 “규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감사·민원조사·계약심사·환경순찰(생활민원)등을”을 “감사·민원조사·계약심사·환경순찰(생활민원) 등을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지방의회·동행정”을 “지방의회·동 행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9호 중 “축산물위생·유통관리계획”을 “축산물 위생·유통관리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주민생활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생활복지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제7조제1항 중 “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4호 중 “조정·연계사항”을 “조정·연계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8호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위법·위험건축물”을 “위법·위험 건축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0호 중 “관한사항”을 “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6호 중 “과태료고지”를 “과태료 고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7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등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[별표 1]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의료·구호지원반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10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, 제1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6조제3항제2
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, 제12조제2항 중 “주
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33조제2
항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, 제38조제4항 “주민생활국장”
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6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3호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⑲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	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보건의료, 동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규정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 및 건설안전교통국을 둔다.	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생활복지국 ----- ----- -----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) ① (생략) ②감사담당관은 <u>감사·민원조사·계약심사·환경순찰(생활민원)</u> 등을, 홍보담당관은 언론·홍보마케팅·영상미디어 등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.	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감사·민원조사·계약심사·환경순찰(생활민원)</u> 등을 ----- ----- -----

제5조(행정관리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지방의회·동행정에 관한 사항</u> 6. ~ 52. (생략)	제5조(행정관리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지방의회·동 행정</u> ----- -- 6. ~ 5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28. (생략) 29. <u>축산물위생·유통관리계획 및 지도·관리에 관한 사항</u> 30. ~ 41. (생략)	제6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1. ~ 28. (현행과 같음) 29. <u>축산물 위생·유통관리계획</u> ----- ----- 30. ~ 41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주민생활국에 두는 과) ① <u>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, 생활보장과, 여성가족과, 어르신복지과, 청소행정과 및 일자리지원과를 둔다.</u> ②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33. (생략) 34. 대상자별 서비스 <u>조정·연계사항</u>	제7조(생활복지국에 두는 과) ① <u>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생활복지국장</u> ----- ----- 1. ~ 33. (현행과 같음) 34. ----- <u>조정·연계</u> 사항

35. ~ 37. (생략)	35. ~ 37. (현행과 같음)
38.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사항	38. ----- ----- 관한 사항
39. · 40. (생략)	39. · 40. (현행과 같음)
제8조(도시관리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	제8조(도시관리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무허가건축물의 발생 방지, 위법·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	5. ----- <u>위법·위험 건축물</u> ----- -----
6. ~ 31. (생략)	6. ~ 31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건설안전교통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	제9조(건설안전교통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건설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----- -----.
1. ~ 19. (생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20. 개인택시 면허심사에 관한 사항	20. ----- 관 <u>한 사항</u>
21. ~ 25. (생략)	21. ~ 25. (현행과 같음)
26.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	26. ----- <u>과태료 고지</u> -----
27. ~ 30. (생략)	27. ~ 30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	제10조(설치) ①----- ----- 「지역보건법」 제7

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	조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.	제13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예산과	
연 락 처	02-901-6137